

- 거래는 안심, 부담은 FREE -  
「서울 프리랜서 안심결제」 서비스 도입·확산  
업 무 협 약 서

서울특별시(이하 '시'라 한다)와 다음 각 협약기관(이하 '기관'이라 한다)은 상호 협력 하에 서울 프리랜서 안심결제(이하 '안심결제'라 한다) 서비스 도입·확산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시와 기관이 프리랜서의 안정적인 결제 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결제 서비스의 도입·확산을 공동 추진하고,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신뢰 기반의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약당사자)** 본 협약은 시와 다음 기관이 체결하며,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.

1. 서울특별시
2. 상명대학교, 세종대학교, 인덕대학교
3.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, 한국생산성본부, 한국능률협회
4.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, 한국웹툰산업협회, 서울연극협회

**제3조(공동 협력사항)**

1. 안심결제 서비스의 활용 촉진 및 확산 노력
2. 프리랜서 및 기업 대상 교육·홍보 프로그램 공동 운영
3. 각 기관 소속 회원, 학생, 기업 등 대상 안심결제 서비스 활용 독려·참여 유도
4. 안심결제 서비스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
5. 기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

**제4조(협약기관의 역할)** 시와 기관은 안심결제 서비스 도입·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서울시: 안심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한 행정·제도적 지원 및 정책 연계
2. 대학교: 청년 프리랜서를 위한 안심결제 활용 교육 및 확산 지원
3. 협 회: 회원, 기업 대상 안심결제 인식 제고 및 도입 촉진을 위한 협력
4. 노동공제회: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홍보

**제5조(협약의 효력)**

1.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.
2.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,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된다.

제6조(협약의 해지) 시와 기관은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7조(협약의 변경) 시와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본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시와 기관은 위 사항을 협약하며,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협약서를 10부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며, 각각은 원본의 효력을 갖는다.

2025년 4월 10일



총장 홍 성 태  
(代)부총장 구 자 용

구 자 용



시장 오 세 훈  
(代)행정1부시장 김 태 균

김 태 균



총장 엄 종 화  
(代)부총장 홍 우 영

홍 우 영



총장 김 광 만

김 광 만



이사장 김 동 만

김 동 만



회장 박 성 중  
(代)부회장 박 재 영

박 재 영



대표 최 권 석  
(代)본부장 김 현 성

김 현 성



연합회장 이 인 기

이 인 기



회장 서 범 강

서 범 강



회장 박 정 의

박 정 의